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-565호

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경과 1·2차 독촉,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「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」 제109조 및 「이륜자동차검사규칙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독촉(정기검사기간경과통지), 명령장을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1. **제　　목** :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 1·2차 독촉,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**공고기간** : 2026. 11. 20. ~ 2026. 12. 4.(14일간)
3. **공고대상** : 붙임내역 참조
4. **문　　의** : 인천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(☎ 032-726-6802)
5. **공시송달 내용**

가. 귀하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알려드리오니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이륜자동차의 도난·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, 「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」 제12조제2항 [별지 제4호서식] 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(유예)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.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